



기안용지

발신처: 운수 (전화번호 75-6818) 인계규정: 조 호
 국장: 권결사항

처리기형	기안자: 권결			제	자
시행일자	1970. 7. 4	용란기	관광운수국장	법무심사	
보유년한		기안일자	70.6.29	결	
보	운수 사업과장	조	관리계장	인	
가		관	고	133	
관		장	136	호	
협	법무과장	주	재무계	공보실	
상	유신	조	관안참조	정서	
수		조		과대장	
검				정리	

제 목: 시영버스 운전원 모집공고

(제 1 안)

내 부 고 지

1. 구간 버스 운전원과 결박수가 부족하여,
2. 비포 운전원의 노조 근무를 하도록 운영에 무리한 지장을 초
 태 하고 있는바,
3. 운전원이 시영 버스에 취업을 기미 하는 근본 원인이 책임감
 에 있는 사실을 감안 하여,
4. 법안과 같이 금번 1970.7.1부터 실시케 되는 가산금 지급제와

243
K-1

서울특별시 63

더불어 정의와 양심으로 노력 하면 민영에 보수 수준 보다 더 낫다는
뜻을 타의 운전원 모집을 신문에 공고 하고자 하오니 재결을 바랍니다.

가. 운전원 T/6: P/10 대비료 (20. 6. 29)

	총부 사업소			남부 사업소			계		
	T/10	P/10	O/S	T/10	P/10	O/S	T/10	P/10	O/S
운전원	185	149	-36	175	166	-9	360	315	-45

나. 공고 방법

시중 일간 신문 4개사에 게재

다. 공고료

- 금 96,000원 (3단 x 40행 x 200원 x 4개사 = 96,000원)

라. 지출 과목

운수사업비용, 자동차사업비용, 영업비용, 광고료

(계 2 안)

수신 수신서 참조

발신. 시장

계목 등 건

1. 근간 운전원의 절대수가 부족 하여 자동차 운행에 막대한 지향
을 초래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하여,

2. 별안과 같이 신문에 공고 하였으니 출원자 에게는 진정 겸대
하고,

3. 가상금을 지급 하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다수 확보 하도록

노력 할것.

수신처 : 중부 및 남부 자동차 운수 사업소장

(제 3 안)

수신 공보실장

발신. 과장

제목 신문 공고 의뢰

법검과 같이 신문 공고 하오니 신문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공고안 1부. 같.

K-3.

204

서울특별시

65

